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선	기 관 의 장
람	

제 624호 2026. 5. 15.

고 시

- 순창군 고시 제2026-104호 2026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1
- 순창군 고시 제2026-106호 순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3

공 고

- 순창군 공고 제2026-518호 순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
- 순창군 공고 제2026-540호 순창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4

회								
람								

발행 : 순창군 (편집 기획예산실)

순창군 고시 제2026-104호

2026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및 유가 민감업종 영위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납세자에 대해 2026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2026. 5. 7.

순창군수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1)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 상 자	'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및 유가 민감업종 영위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자
연 장 기 간	3개월
연장된 납부기한	2026. 8. 31.

2)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상세)

구 분	세 부 내 용	제외대상
'26년 1월 부가가치세 직권 연장대상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과세자) '24년 연매출액 10억원 이하로, '25.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 (업종) 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업 ▶ (간이과세자) 사업자 전체(업종 및 과세표준 규모 무관) ※ 단, 부동산임대업, 전문직사업자(부가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제외 	성실신고 확인사업자.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유가 민감업종 사업자	▶ (업종) (석유)화학 제조업 및 운수업 등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정산지연 및 파산진행으로 물품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피해자	

2.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대 상 자	·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의 기한연장을 신청하고 승인 통지를 받은 자
연장된 신고기한	·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신고기한과 동일
연장된 납부기한	·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납부기한과 동일

3. 국세청으로부터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승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 승인됨을 알려드립니다.

4.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고시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063-650-1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고시 제2026-106호

순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142호(2026. 5. 1.)로 결정(변경) 고시된 순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순 창 군 수
2026년 5월 15일

1. 순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495,702,367	-	495,702,367	100.00%		
도시지역	합 계	10,110,000	-	10,110,000	2.04%		
	주거지역	소 계	952,741	-	952,741	0.19%	
		제1종일반주거지역	642,703	-	642,703	0.13%	
		제2종일반주거지역	310,038	-	310,038	0.06%	
	상업지역	소 계	124,600	-	124,600	0.03%	
		일반상업지역	124,600	-	124,600	0.03%	
	녹지지역	소 계	9,032,659	-	9,032,659	1.82%	
		생산녹지지역	1,771,452	-	1,771,452	0.36%	
		자연녹지지역	7,261,207	-	7,261,207	1.46%	
비도시지역	합 계	485,592,367	-	485,592,367	97.96%		
	관리지역	소 계	146,059,330	증) 241,073	146,300,403	29.51%	
		보전관리지역	52,547,501	증) 6,844	52,554,345	10.60%	
		생산관리지역	48,922,870	증) 219,851	49,142,721	9.91%	
		계획관리지역	44,588,959	증) 14,378	44,603,337	9.00%	
	농림지역	315,864,434	증) 107,829	315,972,263	63.75%		
자연환경보전지역	23,668,603	감) 348,902	23,319,701	4.70%			

기정) 1. 순창군 고시 제2025-6호[순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2.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98호[순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보전-01	구림면 자양리 592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 관리지역	3,812	80% 이하	◦1만㎡ 미만의 블록으로 인접 관리지역을 고려하여 금회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보전-02	구림면 월정리 428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 관리지역	1,829	80% 이하	◦1만㎡ 미만의 블록으로 인접 관리지역을 고려하여 금회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보전-03	구림면 월정리 472-2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 관리지역	752	80% 이하	◦1만㎡ 미만의 블록으로 인접 관리지역을 고려하여 금회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보전-04	구림면 자양리 598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 관리지역	331	80% 이하	◦1만㎡ 미만의 블록으로 인접 관리지역을 고려하여 금회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보전-05	구림면 월정리 산204-1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 관리지역	55	80% 이하	◦1만㎡ 미만의 블록으로 인접 관리지역을 고려하여 금회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보전-06	구림면 월정리 397-5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 관리지역	47	80% 이하	◦1만㎡ 미만의 블록으로 인접 관리지역을 고려하여 금회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보전-07	구림면 월정리 391-3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 관리지역	13	80% 이하	◦1만㎡ 미만의 블록으로 인접 관리지역을 고려하여 금회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보전-08	구림면 월정리 397-5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 관리지역	2	80% 이하	◦1만㎡ 미만의 블록으로 인접 관리지역을 고려하여 금회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보전-09	구림면 월정리 433-2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 관리지역	2	80% 이하	◦1만㎡ 미만의 블록으로 인접 관리지역을 고려하여 금회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보전-10	팔덕면 청계리 산227-1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1	80% 이하	◦별도 용도지역으로 관리하기에 불합리한 면적으로 인 근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보전-11	팔덕면 청계리 산195-1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 관리지역	1	80% 이하	◦1만㎡ 미만의 블록으로 인접 관리지역을 고려하여 금회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생산-01	팔덕면 서흥리 618-2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생산 관리지역	74,181	80% 이하	◦보전적성(생산활동지)이 우세한 지역으로 인접 관리 지역을 고려하여 금회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생산-02	팔덕면 서흥리 316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생산 관리지역	18,114	80% 이하	◦보전적성(생산활동지)이 우세한 지역으로 인접 관리 지역을 고려하여 금회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생산-03	구림면 자양리 602-5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생산 관리지역	11,317	80% 이하	◦보전적성(생산활동지)이 우세한 지역으로 인접 관리 지역을 고려하여 급회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생산-04	구림면 자양리 598-1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4,422	80% 이하	◦보전산지인 농림지역으로 인해 주변과 단절되어 있고, 토지이용 및 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생산-05	구림면 자양리 635-2	자연환경 보전지역	생산 관리지역	2,022	80% 이하	◦1만㎡ 미만의 블록으로 인접 관리지역을 고려하여 급회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생산-06	구림면 자양리 676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생산 관리지역	2,337	80% 이하	◦1만㎡ 미만의 블록으로 인접 관리지역을 고려하여 급회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생산-07	구림면 자양리 664-1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생산 관리지역	2,331	80% 이하	◦1만㎡ 미만의 블록으로 인접 관리지역을 고려하여 급회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생산-08	팔덕면 서흥리 295-2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949	80% 이하	◦보전산지인 농림지역으로 인해 주변과 단절되어 있고, 토지이용 및 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생산-09	팔덕면 장안리 629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942	80% 이하	◦보전산지인 농림지역으로 인해 주변과 단절되어 있고, 토지이용 및 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생산-10	팔덕면 서흥리 287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생산 관리지역	886	80% 이하	◦1만㎡ 미만의 블록으로 인접 관리지역을 고려하여 급회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생산-11	팔덕면 장안리 628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882	80% 이하	◦보전산지인 농림지역으로 인해 주변과 단절되어 있고, 토지이용 및 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생산-12	팔덕면 장안리 569-3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714	80% 이하	◦보전산지인 농림지역으로 인해 주변과 단절되어 있고, 토지이용 및 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생산-13	구림면 자양리 652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생산 관리지역	294	80% 이하	◦1만㎡ 미만의 블록으로 인접 관리지역을 고려하여 급회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생산-14	구림면 자양리 668-1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198	80% 이하	◦보전산지인 농림지역으로 인해 주변과 단절되어 있고, 토지이용 및 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생산-15	구림면 화암리 1128-3	자연환경 보전지역	생산 관리지역	83	80% 이하	·1만㎡ 미만의 블록으로 인접 관리지역을 고려하여 금회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생산-16	팔덕면 장안리 571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79	80% 이하	·보전산지인 농림지역으로 인해 주변과 단절되어 있 고, 토지이용 및 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농림지역으 로 용도지역 변경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생산-17	팔덕면 장안리 687	자연환경 보전지역	생산 관리지역	3	80% 이하	·1만㎡ 미만의 블록으로 인접 관리지역을 고려하여 금회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계획-01	팔덕면 장안리 334-1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생산 관리지역	39,556	80% 이하	·보전적성(생산활동지)이 우세한 지역으로 인접 관리 지역을 고려하여 금회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계획-02	팔덕면 장안리 66-1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생산 관리지역	19,696	80% 이하	·보전적성(생산활동지)이 우세한 지역으로 인접 관리 지역을 고려하여 금회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계획-03	팔덕면 장안리 666-6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생산 관리지역	18,487	80% 이하	·보전적성(생산활동지)이 우세한 지역으로 인접 관리 지역을 고려하여 금회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계획-04	팔덕면 서흥리 297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생산 관리지역	11,036	80% 이하	·보전적성(생산활동지)이 우세한 지역으로 인접 용도 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금회 생산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계획-05	팔덕면 서흥리 569-1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생산 관리지역	9,851	80% 이하	·1만㎡ 미만의 블록으로 인접 관리지역을 고려하여 금회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계획-06	팔덕면 장안리 562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생산 관리지역	9,657	80% 이하	·1만㎡ 미만의 블록으로 인접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금회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계획-07	팔덕면 서흥리 583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계획 관리지역	7,668	100% 이하	·1만㎡ 미만의 블록으로 인접 관리지역을 고려하여 금회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계획-08	팔덕면 청계리 941-2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계획 관리지역	4,411	100% 이하	·1만㎡ 미만의 블록으로 인접 관리지역을 고려하여 금회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계획-09	팔덕면 서흥리 574	자연환경 보전지역	계획 관리지역	1,091	100% 이하	·1만㎡ 미만의 블록으로 인접 관리지역을 고려하여 금회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계획-10	팔덕면 청계리 806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계획 관리지역	221	100% 이하	·1만㎡ 미만의 블록으로 인접 관리지역을 고려하여 금회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계획-11	팔덕면 장안리 577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계획 관리지역	50	100% 이하	◦1만㎡ 미만의 블록으로 인접 관리지역을 고려하여 금회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계획-12	구림면 자양리 635-4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계획 관리지역	937	100% 이하	◦1만㎡ 미만의 블록으로 인접 관리지역을 고려하여 금회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농림-01	팔덕면 장안리 산93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29,866	80% 이하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공익용산지)로 관련 법령에 의거 금회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농림-02	팔덕면 장안리 산95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25,273	80% 이하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공익용산지)로 관련 법령에 의거 금회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농림-03	팔덕면 서흥리 산142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7,412	80% 이하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공익용산지)로 관련 법령에 의거 금회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농림-04	팔덕면 서흥리 산52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4,629	80% 이하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공익용산지)로 관련 법령에 의거 금회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농림-05	팔덕면 서흥리 산36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4,234	80% 이하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공익용산지)로 관련 법령에 의거 금회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농림-06	팔덕면 서흥리 산62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3,894	80% 이하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공익용산지)로 관련 법령에 의거 금회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농림-07	팔덕면 장안리 산92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3,800	80% 이하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공익용산지)로 관련 법령에 의거 금회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농림-08	구림면 월정리 산204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3,532	80% 이하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공익용산지)로 관련 법령에 의거 금회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농림-09	팔덕면 장안리 627-2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2,747	80% 이하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공익용산지)로 관련 법령에 의거 금회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농림-10	팔덕면 서흥리 산64-3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1,983	80% 이하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공익용산지)로 관련 법령에 의거 금회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농림-11	구림면 자양리 598-2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1,922	80% 이하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공익용산지)로 관련 법령에 의거 금회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농림-12	팔덕면 장안리 산125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1,322	80% 이하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공익용산지)로 관련 법령에 의거 금회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농림-13	팔덕면 장안리 산143-3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1,253	80% 이하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공익용산지)로 관련 법령에 의거 금회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농림-14	팔덕면 장안리 558-2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1,238	80% 이하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공익용산지)로 관련 법령에 의거 금회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농림-15	팔덕면 서흥리 산129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1,167	80% 이하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공익용산지)로 관련 법령에 의거 금회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농림-16	팔덕면 서흥리 산196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1,089	80% 이하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공익용산지)로 관련 법령에 의거 금회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농림-17	팔덕면 서흥리 601-1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893	80% 이하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공익용산지)로 관련 법령에 의거 금회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농림-18	팔덕면 장안리 636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879	80% 이하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공익용산지)로 관련 법령에 의거 금회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농림-19	구림면 자양리 산129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708	80% 이하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공익용산지)로 관련 법령에 의거 금회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농림-20	팔덕면 장안리 산121-1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397	80% 이하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공익용산지)로 관련 법령에 의거 금회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농림-21	팔덕면 장안리 345-3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278	80% 이하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공익용산지)로 관련 법령에 의거 금회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농림-22	팔덕면 장안리 346-3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271	80% 이하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공익용산지)로 관련 법령에 의거 금회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농림-23	팔덕면 장안리 569-2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235	80% 이하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공익용산지)로 관련 법령에 의거 금회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농림-24	팔덕면 서흥리 산197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171	80% 이하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공익용산지)로 관련 법령에 의거 금회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농림-25	팔덕면 서흥리 647-2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136	80% 이하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공익용산지)로 관련 법령에 의거 금회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농림-26	팔덕면 서흥리 산196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130	80% 이하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공익용산지)로 관련 법령에 의거 금회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농림-27	팔덕면 장안리 360-3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126	80% 이하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공익용산지)로 관련 법령에 의거 금회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농림-28	팔덕면 서흥리 642-3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56	80% 이하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공익용산지)로 관련 법령에 의거 금회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농림-29	팔덕면 서흥리 산102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1	80% 이하	。별도 용도지역으로 관리하기에 불합리한 면적으로 당초 용도지역인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유지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농림-30	팔덕면 청계리 산246-12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1	80% 이하	。별도 용도지역으로 관리하기에 불합리한 면적으로 당초 용도지역인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유지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농림-31	팔덕면 청계리 산198-2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1	80% 이하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공익용산지)로 관련 법령에 의거 금회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 순창군 고시 제2023-63호(23.01.26) 및 제2023-172호(23.12.05)]

2. 순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관계도서 : “실음생략”

3.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건설과(☎ 063-650-18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법 예 고 문

순창군 공고 제2026 - 518호

「순창군 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5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일부 반영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21조의 2(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3. 의견 제출

가.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수 [참조 : 건설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6039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청 건설과

(☎ 063-650-1827, Fax 650-1829 또는 순창군청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sunchang.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건설과 도시계획팀(☎063-650-182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입 법 예 고 문

순창군 공고 제2026-540호

순창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5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보훈회관 준공 및 입주 예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보훈단체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순창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4조)

나. 입주단체 및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다. 이용대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3조)

라. 준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제15조)

3. 의견제출

가. 순창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수[참조: 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6039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 063-650-1251, Fax 063-650-1269

또는 순창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unchang.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보훈업무 담당자

(☎063-650-125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순창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과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순창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순창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304에 둔다.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훈단체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보훈 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등 단체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3.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4. 그 밖에 국가 보훈에 공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제6조(입주단체의 의무) ① 입주단체는 시설물의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입주단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제7조(사용허가 등) 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보훈회관에 입주를 희망하는 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③ 허가기간의 갱신 또는 기간의 연장, 허가의 취소, 청문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보훈단체(이하 “입주단체”라 한다)가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무실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전부 또는 일부를 입주단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제9조(이용대상)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창군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훈회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
2. 보훈회관의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의 안전 유지 및 관리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운영) 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훈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보훈회관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① 수탁자 및 입주단체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 및 입주단체는 수탁기간 또는 입주기간 중에 시설물이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창군 물품관리 조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